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·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9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17. 고병준 의원 외 7명
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20.

다. 상정일자 :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23. 11. 2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: 한선미 의원

가. 제안이유

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알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정보화 능력의 향상은 장애 인에게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바,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청의 정보를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제공할 책무(안 제3조)
- 2)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

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(안 제4조)

3)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(안 제5조)

4) 장애인·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
관한 사항(안 제6조)

5)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(안 제7조)

6) 구정 및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다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
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 안은 정보화 사회에서
정보의 알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서 정보접근성 제고 및
정보화 능력의 향상은 장애인에게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
있는 바,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
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
제출된 것으로,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청의 정보
를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제공할 책무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4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
층 현황과 정보화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,
 -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
획의 수립 및 시행을,
 -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장애인·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
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
정하였으며,

- 안 제8조에서는 구정 및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,
 -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행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구의 이용 가능한 PC 보유율은 61.2%로 일반국민 72.4% 보다 11.2% 낮고,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86.2%로 일반국민 98.3% 보다 12.4% 낮은 수준임. 아울러 인터넷 이용률은 85.5%로 일반국민 93.0% 보다 7.5% 낮고 SNS · 메신저 · 개인블로그 등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은 87.4%로 일반국민 91.8% 보다 4.4%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.
이 조사 결과에서 보듯 장애인과 일반인의 정보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고 향후 정보 격차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사회적 ·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.
- 종합검토의견
 - 마포구 등록장애인 수는 12,956명('23. 7월말 기준)으로 전체인구의 3.55%임을 고려할 때,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며,
 - 디지털 확대 및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인하여 급증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마련되지 않거나 점자가 없고 눈높이도 맞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 등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격차를 느끼는 사례가 즐비합니다.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, 장애인은 경제적 상황과 디지털 활용능력 및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므로 정보격차의 가속화가 발생하고 있으며,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될 우려가 크므로 사회적·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. 아울러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, 앞으로 정보격차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인식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참 고 자 료

1. 관련법령

장애인복지법

제22조(정보에의 접근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·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, 그 밖의 교육·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(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)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2. 19.>

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(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, 음성도서,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·보급하고,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·파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20조(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) ① 개인·법인·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개인 등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, 점역, 점자교정, 낭독, 대필,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·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·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6. 2. 3.>

제23조(정보접근·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·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·제작·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, 구화,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,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 1. 28., 2016. 2. 3., 2017. 12. 19.>

지능정보화 기본법

제45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6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국가기관등은

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·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-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(이하 “지능정보제품”이라 한다)를 설계, 제작, 가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장애인·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기관 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·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-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, 검증절차,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마포구 장애인 현황 (2023. 7.말 기준)

등급	등급별장애인수 (명)
계	12,956
심한	4,984
심하지 않은	7,972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